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2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 적용대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5조)
- 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9조)
- 라.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안 제10~14조)
- 마.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15~16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에 4.6억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 대응 및 지원을 맡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 시설 설치, 민간위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1인가구 현황과 정책 추진 환경
 -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음(2020년 기준)

<표> 가구원 수별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연도	전체		1인		2인		3인		4인 이상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2015	19,111	100.0	5,203	27.2	4,994	26.1	4,101	21.5	4,813	25.2
2016	19,368	100.0	5,398	27.9	5,067	26.2	4,152	21.4	4,751	24.5
2017	19,674	100.0	5,619	28.6	5,260	26.7	4,179	21.2	4,616	23.5
2018	19,979	100.0	5,849	29.3	5,446	27.3	4,204	21.0	4,481	22.4
2019	20,343	100.0	6,148	30.2	5,663	27.8	4,218	20.7	4,315	21.2
2020	20,926	100.0	6,643	31.7	5,864	28.0	4,200	20.1	4,218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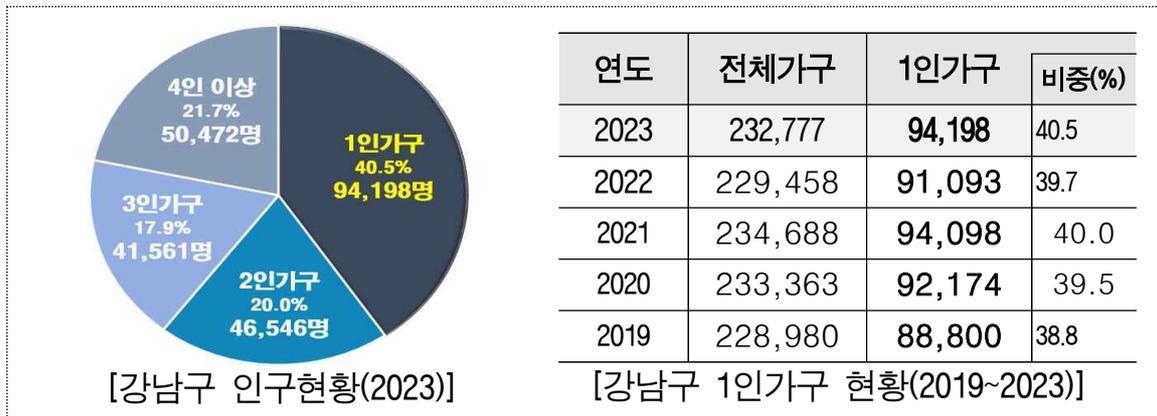
〈표〉 연령대별 1인가구수 및 증감

(단위 : 만가구)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0년(A)	225.5	57.3	42.8	29.7	24.9	35	35.8
‘20년(B)	664.3	134.3	111.5	90.3	103.9	103.8	120.2
차이(B-A)	438.8	77	68.7	60.6	79	68.8	84.4

- 청년, 중장년, 노년 전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음

〈표〉 강남구 1인가구 증감 현황



-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40.5%(9만4천 가구)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생활편의성을 중시하는 독신생활 선호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함¹⁾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으로 나타났음

1) 반은석·김동재, “1인 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고양시 1인 가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5집(2017. 6),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표〉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

(단위 : %)

구분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	주위 시선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임종에 대한 불안감	주거 관리 어려움	의지할 사람 부족
전체	20.3	23.3	32.5	6.5	6.6	3.8	3.7	2.5
남자	16.5	26.5	36.1	6.6	1.3	4.3	2.5	4.3
여자	22.7	21.2	30.1	6.5	10.0	3.6	4.5	1.5
20대 이하	8.9	16.8	44.1	7.9	7.4	1.9	5.1	2.5
30·40대	15.4	21.7	34.1	9.4	4.1	2.7	5.7	3.3
50·60대	33.9	28.9	22.7	1.2	0.7	4.5	1.7	2.9
70대 이상	20.4	31.1	20.5	6.0	6.7	9.3	0.0	0.0

- 1인가구는 성별·연령별·소득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종전에는 1인가구를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을 비롯한 가족해체 현상에 따른 가족돌봄 기능 약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및 고립 등)에 노출된 취약한 가족형태로 인식하여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형태로 인식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받아들이고자 함이 금번 조례안의 취지라고 하겠음.
- 가족형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형성배경과 사회적 시류 등을 감안할 때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2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안 제3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서울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나. 기본·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례안은 가족 형태의 하나로써 1인 가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1인가구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1인가구의 세대별·성별·지역별 욕구 확인과 변화,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1인가구 지원 사업 및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지원사업 확대(안 제9조)

-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주거 안정 지원사업, ▶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 커뮤니티 지원사업, ▶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음
- 1인가구는 혼인을 감소, 초혼연령 연장, 독립된 경제활동, 이혼·별거, 고령화 등 연령별·세대별·소득계층별로 자발적·비자발적인 다양한 형성 원인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조례안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경제적 특성과 욕구,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요구에 맞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또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과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지도·점검, 보고, 서류제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집행부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였음
- 센터는 종전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될 것으로 사료됨
- 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다른 자치구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강남구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사업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상생활, 문화·경제·소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가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3~4인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된 지원 사업 실시 및 센터 기능 확대 등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됨
-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사회구성원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인가구에 치우친 정책적 기조를 수정하여 1인가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회하고,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제출내역 1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일반현황

□ 운영 개요

추진근거	강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법인 : (사)한국공유경제진흥원 - 운영기간 : 2019. 6. 10. ~ 2024. 6. 9. (5년) / 개관일 : 2019.12.30. 	
운영인력	총 4명 (센터장: 정수미)	
시설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남구 논현로86길 29, 1-2층 - 약도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 화-일 10:00 ~ 21:00 / 월, 공휴일 휴관 - 공간구성 	
	구분	사용현황
	1층 [194.31㎡ (58.7평)]	운영사무실, 1인 테이블, 휴게공간, 리운지 등
2층 [192.09㎡ (58.1평)]	회의실, 상담실, 공유주방, 무대 등	
사업내용	전국 최초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센터사진	 	

5개 분야 11개 사업

연번	분	야	사 업 명	구 분
1	안	전	서울 안심이 앱	계 속
2			안심귀가스카우트	계 속
3			안심마을보안관	계 속
4			안심택배함	계 속
5	경 제/일 자리		1인가구 싱글빙글 경제교육 프로그램	계 속
6	외 로 움		1인가구 상담 카운슬링 멘토 프로그램	계 속
7			1인가구 마음상담 지원	계 속
8	질 병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계 속
9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계 속
10	주 거		1인가구 주거 관련 총괄정보 제공(홈페이지)	계 속
11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계 속

※ 출처 :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싱글빙글 서울)

(<https://1in.seoul.go.kr/front/sport/sportListPage.do>)

5개 분야 36개 사업 13개 부서

분 야	사 업 명	추진부서	구 분	
안 전 (1 반)	1-1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주 민 자 치 과	계속
	1-2	ICT활용 스마트 돌봄서비스	복 지 정 책 과	계속
	1-3	강남구 돌봄SOS센터 운영	복 지 정 책 과	확대
	1-4	ICT 돌봄서비스(AI스피커)	어르신복지과	계속
	1-5	독거노인안전·건강관리솔루션(IoT)	어르신복지과	계속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복지과	확대
	1-7	통합사례지원사업	어르신복지과	계속
	1-8	여성가구를 위한 홈 방법 서비스지원	가 족 정 책 과	계속
	1-9	안심택배함 운영	가 족 정 책 과	계속
	1-10	안심 귀가스카우트 운영	가 족 정 책 과	계속
	1-11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재 난 안 전 과	확대
	1-12	스마트 보안등 설치	도 로 관 리 과	신규
경 제 일 자 리 (2 반)	2-1	맞춤형 취업지원(취업박람회, 취업특강, 컨설팅)	일자리정책과	계속
	2-2	안심일자리사업 운영(공공근로)	일자리정책과	계속
	2-3	희망두배청년통장	복 지 정 책 과	계속
	2-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 회 보 장 과	확대
외 로 움 (3 반)	3-1	1인가구 주민공모사업	주 민 자 치 과	계속
	3-2	마음건강 통합 플랫폼 위안 및 힐링캠프 운영	주 민 자 치 과	계속
	3-3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 역 경 제 과	계속
	3-4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복 지 정 책 과	확대
	3-5	사회안전망 구축	복 지 정 책 과	계속
	3-6	고위험 1인가구 발굴	복 지 정 책 과	계속
질 병 (4 반)	4-1	위기 1인가구 마음건강 사업	복 지 정 책 과	확대
	4-2	건강한 강남 밥상 챌린지 프로그램	보 건 행 정 과	계속
	4-3	1인가구 비대면 금연상담 및 절주 홍보	보 건 행 정 과	계속
	4-4	대사증후군건강관리서비스지원	질 병 관 리 과	계속
	4-5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질 병 관 리 과	확대
	4-6	코로나 확진자 집중관리	질 병 관 리 과	계속
	4-7	자살예방사업	건 강 관 리 과	계속
	4-8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건 강 관 리 과	계속
	4-9	1인가구 청년 마음건강 사업	건 강 관 리 과	계속
주 거 (5 반)	5-1	1인가구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복 지 정 책 과	확대
	5-2	강남형수요자맞춤형 매입공공주택 사업	사 회 보 장 과	계속
	5-3	서울형임차료(주택바우처) 지원	사 회 보 장 과	계속
	5-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 회 보 장 과	신규
	5-5	신혼부부 청년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 택 과	신규

※ 근거 : 복지정책과-2596(2023.1.31.)호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질 의 :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례인가
- 답 변 : 주민등록 상은 2인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인가구라든가 아니면 부모랑 어르신과 자녀가 같이 있는데 어르신이 전혀 가족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를 1인가구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음
- 질 의 : 예산 추계의 4억5,400만원에서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 답 변 : 4억 5400만원 중 인건비는 1억 9,000만원, 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임대료가 1억1,000만원 차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예산 확대 노력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2호

발의일자 : 2023. 4. 2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구청장의 책무 규정에서 오류를 바로 잡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구청장의 추진 대상을 “1인가구 정책”으로 수정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제4조(책무) “1인가구의”를 “1인가구 정책”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책무) 구청장은 <u>1인가구의</u>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 <u>1인가구 정책</u> - -----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연월일 : 2023. 4. 6.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적용대상,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5조)

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9조)

라.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안 제10~14조)

마.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15~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에 4.6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안정 지원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3. 주민 소모임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9, 지상 1층~ 2층

